

-농지임대수탁사업 신청서류-

**농지 소유자**

의무공고기간 10일, 연 임대수수료 5%, 매년 12월 25일 지급

- 신분증 앞·뒷면 사본, 통장사본, 주민등록등본, 도장(계약 당일 지참)
- 필지별 토지대장 1부 [지자체 / 군·읍·면사무소]
- 필지별 등기부등본(등기사항전부증명서) 1부 [등기소, 인터넷 대법원등기소]
- 필지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부 [지자체 / 군·읍·면사무소]
- \*문중 명의 및 법인 명의 농지, 주말·체험영농목적 취득 농지 등 계약 불가
- \*토지대장,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부동산종합증명서로 대체 가능

※농지 소유자가 계약 당일 방문하기 어려울 때

- 인감증명서 1부 (서명 및 용도란에 '위임용' 기재)
- 위임장 (한국농어촌공사 양식, 위임자에 본인 이름 기재 및 인감도장 날인)

※농지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 - 위임장 작성법 참조

- 소유자 인감증명서, 신분증 앞·뒷면 사본, 주민등록등본 각 1부
- 위임장 (한국농어촌공사 양식, 인감도장 날인, 대표 1인에게 위임)

※경작자와 4촌 이내일 때 (의무공고기간 10일 없음)

- 경작자와 4촌 이내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
**농지 경작자**

선납, 후납(연대보증인, 보증보험, 근저당 중 택 1) 선택

- 신분증 앞·뒷면 사본, 도장(계약 당일 지참)
-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농지원부 1부 [지자체 / 군·읍·면사무소]
- 연대보증인 서류: 신분증, 도장, 주민등록등본,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 
(연대보증인 선택 시 063-560-1509 필히 전화하여 가능 여부 확인)
- 신청 농지가 임야, 대지 등 일 경우 해당 농지 직불금 수령내역(3개년) 필요

063-560-1510

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농지은행부